

대학원 생명과학과 졸업 관련 내규 시행세칙

2022. 09. 30. 제정
2023. 09. 30. 1차 개정
2024. 11. 30. 2차 개정

목적

이 내규는 건국대학교 대학원학칙 제22조의 6호에 따른 생명과학과의 종합시험에 필요한 사항 및 제 38조(학위수여)에 규정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학과 내 졸업기준, 입학전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종합시험

가. 응시자격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끝낸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나.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승인하에 학과가 지정하는 시기(매년 3월 또는 9월)에 종합시험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시험과목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박사학위과정은 3과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시험위원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으로 위촉하고 시험위원은 시험문제 출제, 문항별 배점, 평가 기준 등을 정한다.

라. 출제방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마. 합격인정 점수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바. 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시행 시기는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2. 학위논문

가. 석사학위 학위논문 대체제도

1) 단독주저자(공동주저자는 해당 안 됨)로 JCR상위10%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고, 지도교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경우에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고 학위청구가 가능하다.

2) 석사 학위논문 대체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학과 세미나에서 연구내용을 발표하여야 한다.

나. 논문 투고 및 발표

1) 석사학위

석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SCI(E) 이상 학술지 1편 또는 SCOUPS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혹은 제출(submission) 하여야 한다.

2) 박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SCI(E) 이상 학술지 2편 이상 또는 SCOUPS 논문의 경우 SCI(E)급 논문 2배 이상 논문을 게재(혹은 게재예제증명서 가능) 하여야 한다.

3) 석박사 공통사항

석사 혹은 박사학위 심사자는 학위 수여 전 학과에서 정한 별도의 세미나 혹은 기타 연구 발표회에서 학위논문 내용을 발표하여야 한다.

이상의 사항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물 제출시까지 생명과학과 학과장과 생명과학과 행정업무 담당자가 심사청구 자격을 심의함.

*기타사항:

- 지도교수 당 1회의 유예권을 부여함. 유예권은 해당 지도학생 중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학위를 취득하여야 할 때 사용하여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유예권 사용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은 불가능함.

3. 입학전형

본교 대학원 입학전형 학칙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학과 내규로 정한다.

가. (일반전형) 일반전형의 선발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병행한다. 서류심사는 ① 대학 및 대학원 성적, ② 학업 및 연구계획서로 한다. 구술시험은 ①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적성, ②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③ 대학원 목표 세부 전공의 구체성으로 시행한다.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은 총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각 배점은 소정양식으로 정리하여 매뉴얼화 한다.

나. (일반전형 이외의 전형) 일반전형에 준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일반대학원 운영내규를 따른다.

시행일

가. 제정 내규는 2022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입학자의 경우 현 기준에 준하여 결정함.

나. 1차 개정 내규는 2022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입학자의 경우 현 기준에 준하여 학위취득요건을 결정함.

다. 2차 개정 내규는 2025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입학자의 경우 현 기준에 준하여 결정함.